

2022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평안하심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22년 9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
2. 장소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검단동 740번지) 당사 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 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

제 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상근감사 1명)

4. 배당내역

- 1주당 예정배당금 : 무배당

5. 경영참고사항비치

상법제542조 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및 하나은행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
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
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
니다.

7.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관리시스템 인터넷주소: 「<http://evote.ksd.or.kr>」 모바일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2년 09월 10일 ~ 2022년 09월 19일(기간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2022 년 09 월 일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동로 35(검단동)

주식회사 성안

대표이사 박상태
(직인생략)

이사선임 세부내역

[사내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경력	국적
김재현	1970.12.28.	3	신규	㈜파라다이스그룹 상무이사 현.김앤유홀딩스 대표	대한 민국
허용호	1967.12.26.	3	신규	주성해운대표이사 현.주성씨앤에어사내이사/부사장	대한 민국
최호관	1962.10.03.	3	신규	한신해운항공 이사 현.주성씨앤에어 전무	대한 민국
성동훈	1969.01.21.			현.(주)대호하이텍 사내이사/대표이사 현. (주)대호테크놀러지 사내이사/대표이사	대한 민국
양원석	1981.09.10.	3	신규	현. (주)대호하이텍 사내이사	대한 민국
조진학	1984.05.28.	3	신규	한려자동차 이사 CKGroove 베트남지사장 현.CKCorperation 이사	대한 민국

[사외이사선임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경력	국적
남경두	1969.06.30.	3	신규	㈜케이에스피 ㈜SNB	대한 민국
김언중	1968.09.28.	3	신규	㈜디지털옵틱공장총괄 ㈜에이프런티어대표 현.㈜모네타자산운용부사장	대한 민국
전현준	1965.11.12.	3	신규	수원지방검찰청안산지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1차장검사(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법무법인태환및법무법인솔루스대표변호사 현.법무법인플래닛대표변호사	대한 민국
정해창	19.	3	신규	인덕회계법인 리앤머로우투자자문 현.대현회계법인공인회계사	대한 민국
송나라	1952.05.20.	3	신규	현.(주)코리아포스트부회장	대한 민국

[감사 선임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 선임 여부	주요경력	국적
이수영	1967.01.17.	3	신규	안전회계법인 감사본부 상무이사(파트너) 주안㈜ 부사장 현.안세회계법인 부산지점장	대한 민국
손광수	1955.04.20..	3	신규	제일투자금융(주) 신한은행 미래저축은행부행장	대한 민국

주식회사 성안 정관 신규대조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섬유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이하생략) 13. 위 각 호에 관련되는 직접 투자 부대사업 일체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섬유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이하생략) 13.키오스크 제조 및 판매업 14.키오스크 렌탈 및 유지보수업 15.키오스크 시스템운영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16.종합 내화물 제조업 17.자원 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18.폐기물 중간처리업 19.폐기물 수집운반업 20.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일체	제 2 조 개정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000 주로 한다.	제 5 조 개정
제 8 조의 2(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④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 분의 1 범위내로 한다. (이하생략) ⑦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 년 이상 10 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결의로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조의 2(이익배당우선주식)①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발행주식총수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이익배당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 또는 1 주당 발행금액을 기준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우선 비율에 따른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우선 배당한다. ③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에 대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⑤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⑥이 회사는 이익배당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결의로 존속기간 및 동 기간 만료와 동시에 전환될 주식의 종류를 정할 수 있다.	제 8 조의 2 개정

	⑦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다.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9 조 개정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 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 34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에탁증권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경우 4.상법 제 340 조의 2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 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상법 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제 2 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방식에 의해 신주를	② 개정 7 신설 ③개정

③제 2 항 제 1 호, 제 2 호, 제 5 호 및 제 6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0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상법시행령 제 13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2.주요주주(상법제 542 조의 8 제 2 항 6 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외한다. 3.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2를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제 10 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 30 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함에 있어서 회사는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임·직원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기술혁신등에 기여하였거나 능력을 갖춘 임·직원으로 한다. ③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초과할 수 없다. ⑤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 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중 높은 금액 가.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① ②③④ 개정 2. 개정 4.신설 ⑨신설

2.제 1 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 1 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당해 주식의 권면액 2.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주식매수선택권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4.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⑨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4 월 31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이 회사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 월 7 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①개정
제 14 조(전환사채의 발행)④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	제 14 조(사채의 발행)①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일조원을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제 14 조 개정 번호변경

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418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현저한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조정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가액) 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제 16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①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 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제 15 조 번호변경 1,2,3,4 신설 ①③ 개정 ⑥ 신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3.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채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법 418 조 제 2 항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다만 현저한 시가하락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시 조정 후 행사가액은(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등의 조정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한 금액)주식의 액면가액을 한도로 조정할 수 있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3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시가하락 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제 15 조(전환사채의 발행)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제 16 조의 2(교환사채의 발행)①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일조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 16 조의 2 신설
제 15-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 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16 조의 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 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	제 15 조의 2 번호변경, 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하생략) 제 17 조(소집시기) (이하생략) 제 18 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7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이하생략) 제 18 조(소집시기) (이하생략) 제 19 조(소집권자) ①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 16,17,18 조 번호변경 ② 개정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 회 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0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 회 일 2 주간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대구광역시에서 발행하는 매일신문과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 1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회사가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외이사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등을 통지·공고하거나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장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사,감사의 선임의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2 항이 규정하는 이사,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등을 통지·공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번호변경 ② 개정 ③ 신설
제 20 조(소집지) (이하생략)	제 21 조(소집지) (이하생략)	제 20 조 번호변경
제 21 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있으면 그 자가 의장이 된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따로 정한 자가 없을경우에는제 34 조	제 22 조(의장)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조 번호변경 ② 개정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이하생략)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이하생략)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하생략)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이하생략)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하생략)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하생략)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이하생략) 제 29 조(이사의 수) (이하생략) 제 30 조(이사의 선임) (이하생략)	제 23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이하생략) 제 24 조(주주의 의결권) (이하생략)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하생략) 제 26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이하생략) 제 27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이하생략) 제 28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이하생략) 제 29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이하생략) 제 30 조(이사의 수) (이하생략) 제 31 조(이사의 선임) (이하생략)	제 22-30 조 번호변경
제 31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 내의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중 결사 까지로 한다.	제 32 조(이사의 임기)이사의 임기는 3 년으로 한 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종료후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전에 만료될 경우에 는 그 총회의 종결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1 조 번호변경 개정
제 32 조(이사의 보선) ①이사중 결원이 생긴 때 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 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3 조(이사의 보선) ①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 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 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사외이사가 사임·사망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 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2 조 번호변경 ①,② 개정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 및 상무 약 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4 조(대표이사 선임)이 회사는 이사회 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제 33 조 번호변경 개정

제 34-조(이사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4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이하생략)	제 35 조(이사의 직무)①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회사의 중요정책 사항은 심의의결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이 사 중 제 35 조의 2 제 1 항에 정한 집행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5 조의 2(집행임원)①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부상무 등의 집행임원을 둘 수 있다. ②집행임원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③집행임원의 수, 임기, 직책, 보수 및 선임 등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5 조의 3(이사의 보고의무) (이하생략)	34 조번호 변경 ② 개정 제 35 조의 2 신설
제 35-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이하생략)	제 36 조(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이하생략)	제 35 조 번호변경
제 37 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 의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3 일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④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다만, 제 2 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이 사 회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이사를 의장으로 한다.	제 37 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 일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②, ③ 개정 ④ 삭제
제 38 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획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 안에 대 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의 수로 한	제 38 조(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 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	①,②개정

다. 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이사가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 41 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 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그 중 1명 이상은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1 조의 2(감사의 수와 선임)①이 회사의 감사는 1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②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 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①,③ 개정
제 41 조의 5(감사의 직무 등) 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 3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⑥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제 41 조의 5(감사의 직무 등)①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④ 삭제 ⑤,⑥ 번호변경 ⑦ 삭제

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⑦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신설)	제 45 조(주식의 소각)①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 하여야 한다. 1.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3.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 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방법에 따를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2 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한다 2.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 46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금액이하 일 것. ④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 2 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45 조신설
제 45-조(이익배당)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자산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6 조(이익배당)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5 조번호변경 ③ 신설

	③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신설)	제 46 조의 2(분기배당)①이 회사는 사업년도 개시일부터 3 월, 6 월 및 9 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2 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 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 1 항의 분기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 1 항의 기준일 이후 45 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 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에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④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분기배당을 할 때에는 제 8 조의 2 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배당률을 적용한다.	제 46 조의 2 신설
제 46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하생략)	제 47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이하생략)	제 46 조 호변경